

의안번호	2218959
의 퇴 인	최형두의원
회 답 일	2026. 7. 24.
추 계 번호	26B26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기금의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 설>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4항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5항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 또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제7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용자금,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1)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중 ‘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①지상파방송사업자,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편PP), ③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PP)에게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⑤위성방송사업자, 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로부터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징수율(6%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며, ⑦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PP)로부터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징수율(15% 이내)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참고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표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수입 현황: 2024~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지상파방송사업자	36,938	24,227	23,306	19,974	20,949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	11,389	8,378	8,006	7,078	7,17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5,288	23,875	24,723	22,891	23,516
위성방송사업자	7,459	7,380	7,196	7,113	7,009
IPTV사업자	81,124	75,109	76,460	76,175	77,302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방송채널사업자	35,152	18,591	17,532	23,525	16,65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만, 현행법은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면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총 납부기관 수	감면 기관 수	감면액
지상파방송사업자	44	13	196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	6	3	2,20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0	24	2,395
위성방송사업자	1	—	—
IPTV사업자	3	—	—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방송채널사업자	12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 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차등 적용 기관 수	차등 적용 비율	차등 적용 납부액
지상파방송사업자	40	△12.3% ~ △83.3%	19,974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	6	△38.3% ~ △88.3%	7,07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위성방송사업자	—	—	—
IPTV사업자	—	—	—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방송채널사업자	—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①분담금 징수대상 범위를 확대(‘복수채널 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초과 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고,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완화하며, ③분담금 감면대상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를 추가하고, ④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수입액이 증감할 수 있음

[표 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감면·차등적용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수입 증감 여부
분담금 징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 징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3% 범위 내 징수	수입 감소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초과 사업자	—		수입 증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광고매출액의 6% 범위 내 징수	수입 증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매출액의 1% 범위 내 징수	수입 증가
분담금 감면 대상		•사업규모나 부담능력 이 일정 기준에 미치 지 못한 자	•사업규모나 부담능력 이 일정 기준에 미치 지 못한 자	수입 감소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방송통신의 공공성· 수익성	•방송통신의 공공성· 수익성	수입 감소
		•방송통신사업자의 재 정상태	•방송통신사업자의 재 정상태	
		—	•방송통신사업자의 기 부금 납부 등 공익 기 여도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은 분담금 징수 대상의 선정기준(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분담금 감면대상자의 선정기준(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비용 금액 기준),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대상자 선정기준(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징수·감면·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 및 징수액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징수 대상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초과 사업자’는 2025년 기준 CJ이엔엠(PP부문, 방송사업매출액 8,342억원²⁾) 1개사로 확인됨

－ 그 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현황(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이용자 수, 트래픽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2) 2025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times$ 5)를 추가 감경"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times$ 5)를 추가 감경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별표 1]

기본징수율의 산정 (제4조제1항 관련)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 방법
1조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원}) \div 1\text{조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원}) \div 9,0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원}) \div 5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원}) \div 40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원})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원})\}] \times \text{조정계수}$

비고

1.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
2.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 감경하여 조정한 0.931로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24호)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 전년도 납부 분담금) × (방송서비스 매출액/전체 영업수익)
---------------------	---	---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홈쇼핑방송매 출수익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	---

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5/100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IPTV사업자	
홈쇼핑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13/100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 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매출액 100억 이하 구간에 1.0/100, 매출액 100억 초과구간에 1.5/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